

가 산 점 부 여 기 준

항목	내용	적용			비고
		서류심사	필기시험	면접심사	
국가유공자 (10%, 5%)	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. 단,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· 10%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 가산점비율 10% 대상자 · 5%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 가산점비율 5% 대상자	○	○	○	
장애인 (5%)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○	○	○	
지역인재 (3%)	-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출신 학교자(사이버,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제외) * 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 * 학사이상 학위자는 학사출신학교 기준, 고졸이하 졸업자는 최종학력 기준	○	○	○	
저소득층 (3%)	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○	-	○	
한부모 가족 (3%)	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○	-	○	
북한이탈주민 (3%)	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○	-	○	
다문화가족 (3%)	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가족	○	-	○	
한국사능력 (3%)	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및 2급 보유자	○	-	○	
청년인턴 경력자 (3%)	-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	○	-	-	

※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5%까지 인정함